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가단2227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대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현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 7. 13.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화성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소외 C은 화성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20. 2. 29.부터 같은 해 8. 31.까지 C에게 합계 60,940,000원 상당의 금형을 납품하였다.
- 2) 원고는 2021. 5. 17.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차전2602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6. 3.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달 10. C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 1) 피고는 군포시에서 'H'이라는 상호로 금형부품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8. 3. 8.경부터 2020. 3. 30.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금형부품 가공의뢰를 받아 이를 납품하였다.
- 2) C은 2020. 4. 24. 원고에게 “2020. 3. 31.자로 피고에 대한 미수금이 115,218,650원임을 확인하고 소외 주식회사 I로에 대한 채권 1억 2,000만 원을 받는 즉시 피고에게 최우선적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의 작성 등

- 1) 피고는 2020. 6. 24.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차776호로 위 물품대금 채권 104,193,6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7. 2. C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20. 6. 25. J 주식회사에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추심 및 신용조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 2) C은 2020. 7. 13. 원고에게, “C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같은 해 7.부터 2021.

4.까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 변제하며, 지연이자는 연 10%로 하고(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 C이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타채550658호로 C이 소외 K, L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12. 11.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K는 2020. 12. 15. 피고에게 C에 대한 채무 중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C에게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20. 12. 16. J 주식회사에 추심수수료(직접 변제)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1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C의 무자력

C은 2020. 7. 13.경 자신 명의로 약 6,300만 원 상당의 인천 남동구 M건물 N호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반면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소외 O에 대하여 32,755,000원, P에 대하여 20,179,138원, Q에 대하여 17,600,000원, R에 대하여 38,359,085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등 은행권에 대하여 합계 180,894,93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종합소득세 등 47,470,23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018. 3.부터 2020. 3.까지로서 원고의 채권보다 먼저 성립하였고,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종전 피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감액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서의 채권은 종전 물품대금 채권과 동일한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보다 먼저 발생한 것이다. 자신의 채권보다 이전에 성립한 피고의 채권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 사건 소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종전 물품대금채무의 일부를 감액과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있는

준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2020. 2. 29.부터 같은 해 8. 31.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와 C 사이에 2020. 7. 13. 체결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으로서 설령 그 원인이 된 채권이 원고의 채권 성립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원고의 채권 성립 이후에 발생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무자력인 C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우선 변제를 받게 하였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C은 피고에 대하여 115,218,6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 체결 전인 2020. 4. 24.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채무를 확인하면서 주식회사 I로부터 변제받는 즉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여 준 점, 피고는 C이 변제하지 아니하자 2020. 6. 24.자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 같은 해 7. 2. C에게 도달하였던 점, 이후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였던 점, C이 피고를 다른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우선 변제하여 줄 목적이었다면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지 않고도 위 지급명령 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확정시키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도 종전 채무를 감액하는 내용인 점, C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3채무자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 주었다는 등 사실상 채권양도를 한 것과 같은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C이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서 정한 분할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으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2020. 12.경에 이르러서야 채권추심업체를 통하여 C의 채권을 추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